❖ 보조금 교부 신청 전 이행 사항

1. 고유번호증 개설 ※ [가치로운 100] 해당없음

- **단체명의**로 고유번호증 개설
- 신청서류(관할세무서 방문 전 확인 필요)
  - ① 법인이 아닌 단체의 **고유번호 신청서(세무서 비치)**
  - ② 단체의 **운영규정(정관 또는 회칙 등)**
  - ③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**(대표자선임 회의록, 단체구성원서명부)**
  - ④ **대표자 신분증, 단체 직인**
  - ⑤ 소재지 입증서류**(임대차계약서 사본(사무실 임차시) / 등기부 등본(자택)**
    무상사용 승낙서(무상으로 사용 시)
  - ⑥ 보조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보조사업 선정공문)

※ 설립목적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세무서에 문의 후 방문 신청
※ 특정 분야(연결실험 프로젝트,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)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대체 가능

2. 보조금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

1) **보조금 전용통장 및 안산시보조금전용카드 개설**(대표자 최근 20일이내에 통장개설이력없어야 함)

[해당사업]
① 가치로운 100 ② 마을만들기 르네상스 프로젝트
③ 연결실험 프로젝트 ④ 아파트공동체_공감활동분야 ⑤아파트공동체_활성화

- 해당 시·군 거래은행에서 반드시 **보조금 전용 통장, 안산시보조금전용체크카드, 인터넷뱅킹** 개설
  - 예금종류 : 보통예금
  - 거래은행 : **NH농협은행**
  - 체크카드 : **보조금전용 체크카드 /** ※인터넷뱅킹은 은행/보험용 공동인증서 발급(수수료 4,400원 자부담)
- 보조사업 **신청서 제출 단체명으로** 통장 개설
  (※가치로운 100 : 대표자명으로 통장발급 및 부기명_단체명 기록 필수)

▪ 구비서류

- 보조금이용관련동의서(은행 비치)
- 단체의 **운영규정(정관 또는 회칙 등)**
-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**(대표자선임 회의록, 단체구성원서명부)**
- **고유번호증, 대표자 신분증, 단체 직인**
- 보조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보조사업 **선정공문**)

▪ 보조금 통장 개설 가능 NH농협은행 리스트

이름	위치	주소	전화번호
농협 반월공단	신길동	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25, 스마트스퀘어2층	031-492-5522
농협 초지동	초지동	안산시 단원구광덕1로61 , 2층	031-482-8500
농협 단원구청	초지동	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	031-475-7432
농협 안산중앙동	고잔동	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7 남양빌딩 2층	031-475-9211
농협 안산시지부	고잔동	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8 농협은행	031-401-0640
농협 안산시청출장소	고잔동	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제2별관 1층	031-487-2111
농협 상록구청	사동	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10 상록구청 1층	031-419-6806
농협 월피동	월피동	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8	031-411-1055
농협 안산도매시장	이동	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12	031-501-6321
농협 선부동	선부동	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4 광원빌딩	031-403-2111
군자농협 대부지점	대부북동	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469-13	032-886-3100

2) 보조금통장 및 보탬e카드(예치형), 인터넷 뱅킹 개설

[해당사업]
① 아파트공동체_자치구축 **② 우리동네 마을대학**
③ 거점공간조성

▪ 해당 시·군 거래은행에서 반드시 **보탬e 전용 통장, 보탬e카드, 인터넷뱅킹** 개설
※인터넷뱅킹은 은행/보험용 공동인증서 발급(수수료 4,400원 자부담)

- 예금종류 : 보통예금
- 거래은행 : **NH농협은행**

- 카　　드 : **보탬e전용 신용카드(예치형)**

▪ 보조사업 **신청서 제출 단체명으로** 통장 개설(단체명과 대표자를 병기)

▪ 구비서류

① 보조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: 보조사업 **선정공문 및 사업수행 확인서**(보탬e 시스템에서 직접 출력)

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

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(안산세무소 및 인터넷 발급가능)

④ 정관, 회칙, 규약, 설립인허가증 중 택일

⑤ 대표자 신분증, 단체 직인

⑥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**(대표자선임 회의록, 단체구성원서명부)**

※ 심사과정에서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

⑦ 보조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보조사업 **선정공문**)